
2025학년도 이주 배경 구직자 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



DAEJEON CAMPUS OF KOREA POLYTECHNIC

[34503]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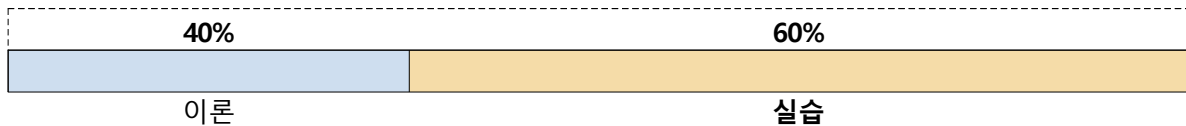
042-670-0510~8 www.kopo.ac.kr/daejeon

〈대전캠퍼스 소개〉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고 싶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한국폴리텍대학 】

이주 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은 이주 배경 구직자(다문화가족의 결혼 이민자 또는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난민 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2개월간 현장 실습 위주 교육 및 유망 분야 자격증 취득 연계 취업 과정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



최신식 교육 장비

모션캡처시스템 / 360 Human Scanner / 햅틱 슈트 / 3D 공간스캐너 / 3D프린터 / VR스튜디오 / Ms Hololens 등

》

산업 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

교육비 · 교재비
전액 무료

기숙사
전액 무료

훈련장려금 지급
· 출석률 기준 종족 시, 대상자별 차등

최상의 교육환경
최신 실습장비 + 실무중심 교육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지도 교수
1:1 멘토링

수료생 전원
취업처 제공

수료 이후
지속 관리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

2

학사 및 학과 안내

■ 교과 운영 시간: 300시간

■ 학과 안내

과정	학과	내용
이주 배경 구직자	메타버스콘텐츠과 (실감형 게임개발)	▪ (학과 소개) 실감형 게임개발 분야의 기술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취업 분야)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기업, VR / AR 콘텐츠 관련 기업,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 3D 콘텐츠 관련 기업 등
		▪ (취득 가능 자격증) ACE, ACS 국제 공인 자격증, GTQ,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3

모집 인원

캠퍼스	학과	직종	모집 정원	모집 인원	모집 1차		
					소개	일반	기획 균형
총계			20	22	22	16	6
대전	메타버스콘텐츠	실감형 게임 개발	20	22	22	16	6

※ 학과 및 모집 차수별 모집 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획 균형 선발은 정원의 30% 범위까지 선발. 단, 미달 시 일반 인원으로 모집

4

전형 일정

구분		원서 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이주 배경 구직자	모집 1차	2025. 5. 26.(월) ~ 2025. 6. 25.(수)	2025. 6. 26.(목)	2025. 6. 27.(금) ~ 2025. 6. 30.(월)
자율 모집		· 결원 발생 시,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예정 / 대학 홈페이지 공지)		
교육 기간(예정)		· 2025. 7. 1.(화) ~ 2025. 8. 29.(금)[300시간]		

■ 원서비 및 전형료 무료

■ 원서 접수

- 접수 방법: 대학 홈페이지 접속 → 입학 안내 → 인터넷 원서 접수 → 과정 선택(이주 배경 구직자 과정) → **입학 원서 작성**

- 대학 홈페이지: <http://www.kopo.ac.kr/daejeon> (**대전폴리텍대학 검색**)

■ 면접 안내

- 개인별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면접일 전일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공지

■ 지원 자격 증빙 서류는 면접 전일까지 메일(권장) 및 대학 방문 제출

- 메일 주소: poly107@kopo.ac.kr

- 대학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 가람관 5층 교무기획처

□ 기본 입학 자격 ※ 자격1~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자격1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①. 결혼이민자 ②. ①의 국내출생 자녀 ③. ①의 중도입국 자녀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F-4) 마.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F-5) 자격 소지자 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 가족 중 '영주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2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나. 비정규 형태 근로자(4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다. 개인사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4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라. 노무제공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4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5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5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아.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격3	만 15세 이상인 자

□ 상세 입학 자격

○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개인사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4억 미만인 사람

○ 노무제공자¹⁾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

○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선발 제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

-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 ※ 최종변동구분(제적, 자퇴, 조기취업, 졸업)의 최종변동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 교육과정까지의 수강 이력은 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에서 교육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전형 방법

□ 성적 반영 요소 및 배점

과정	계	성적 반영 요소	성적 적용 비율
		면접 점수	
이주 배경 구직자	100점	100점	면접 100%

□ 면접 안내

과정	종류별	실시 내용
이주 배경 구직자	면접	• 학업 및 취업 의지,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도 • 학과 특성에 따라 수학 가능 여부 판단
		• 면접 당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 • 시간 및 장소는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선발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구분	내용
선발 방법	• 최초 합격자는 학과(직종)별 지원자 중에서 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초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 합격 후보자 중에서 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총원 합격자 선발 • 총원 합격자 등록 기간 이후의 결원은 다음 모집 차수로 이월하여 선발 • 제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입학 전형 개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정 방법 등 본 대학 모집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1. 의사소통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2. 자기개발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3. 대인관계능력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4. 직업윤리 항목 면접점수 우수자

7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예외 별도 표기)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 방문, 등기, 담당자 이메일 발송본 인정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통 서류[홈페이지 입학 원서 작성 시 자동 제출됨]

자격 구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① 입학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1에 관한 서류

자격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발급기관)
결혼이민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② 귀화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및 서류발급기관
국내출생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중도입국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전 ①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② 자녀와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의 직업훈련 추천서	별도 안내
외국국적동포 (F-4)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영주자(F-5)	■ 영주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①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 ② 아래 국적판정 구분에 따른 서류 중 택1 - (국적판정 전)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적판정 후) 국적보유판정 통지서,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국적심사 ▶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및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 자격2에 관한 서류

자격 구분		제출 서류	비고 (발급기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제출서류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 조회
비정규형태 근로자		■ 비정규 형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별도 안내
사업자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외)	■ (일반)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사업자등록증명원 ■ (면세)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 (휴업)휴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 (일반)사업자등록증명원+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사업자등록증명원 ■ (면세)사업자등록증명원 ■ (휴업)휴업사실증명원	
노무제공자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산업체
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홈택스
고유번호 단체 대표		■ 고유번호증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및 홈택스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승인 통지서	▶ 근로복지 공단
졸업까지 남은 연한 2년 이내인 자		■ (전문대학) 재적증명서 ■ (3년제대학이상)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 해당 대학

□ 기회균형선발 서류

○ 다음 중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제출

자격 구분	제출 서류	비고(발급기관)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주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온라인 접수자는 제출 불필요)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구분		최초 합격자 발표일
		모집 1차
합격자 발표 및 충원	이주 배경 구직자	2025. 6. 27.(금)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충원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연락처(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본인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함 - 전화 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전화 이외의 연락수단(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음 -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고지된 등록기간 내 등록 또는 등록 포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충원 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3회 이상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 불가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전화통화 불가 및 연락처 변경으로 발생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연락처 변경 시 대학 입시 담당자에게 통보
구분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모집 1차
등록 방법	이주 배경 구직자	2025. 6. 27.(금) ~ 2025. 6. 30.(월)
	유의사항	-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통한 등록) - 합격자는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와 등록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 - 등록 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연락없이 입학을 취소함 2개 이상의 폴리텍대학 내 캠퍼스에 이종으로 등록하는 행위금지

유의사항	내용
접수 취소(변경) 불가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제한 없음 - 등록 및 등록 포기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이중 등록 금지 - 동일한 캠퍼스·모집과정·모집(과정)차수에서 한 개 학과만 지원가능
면접 불참자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지원시 대학의 면접일정 확인 바람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전화 총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추가연락처 포함)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총원합격자 개별통보(전화총원 시) 시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총원함
필수(추가) 서류 제출	-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수험자는 면접 전일까지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 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함(예외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름) -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 제출
우선선발 지원자	우선 선발자로 지원한 경우, 해당 자격의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합격/입학 무효처리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 입학원서, 졸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 미달인 자 -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폴리텍대학 내 과정 구분 없이 이중등록이 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기 타	- 학과별 모집 정원의 50%미만 등록 시 해당 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 요강 기재 내용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등록 포기 방법	- 방법: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 포기 신청 - 등록 포기 신청이 승인 처리 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